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75

발의연월일: 2020. 7.17.

발 의 자: 민형배 • 이용빈 • 변재일

김경만 • 이정문 • 양정숙

이원택 • 이탄희 • 김철민

홍익표 • 이해식 • 송영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 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 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 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매장임차인이"를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u>매장</u>	금지) <u>매장</u>
<u>임차인이</u> 질병의 발병과 치료	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
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	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	<u>o]</u>
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	
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